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2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진성준ㆍ이재관ㆍ허 영

민병덕 • 이연희 • 강선우

박상혁 · 김윤덕 · 위성곤

조 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일부 복리시설의 활용이 저조한데도 입주민의 특성에 맞지 않게 최초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동일 시설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 요에 맞추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설치·정비되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관리의무"를 "관리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업주체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주체의 <u>관리의무</u>) ① •	제7조(사업주체의 <u>관리의무 등</u>)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사업주체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u>있다.</u>
<u> <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